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광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55

발의연월일: 2024. 6. 17.

발 의 자:임광현·정일영·정태호

박홍근 · 정성호 · 김영환

최기상 • 윤호중 • 정준호

김정호 · 강준현 · 조승래

임미애 · 황명선 · 신영대

황정아 · 김성환 · 서영석

황 희 의원(19인)

제안이유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정부가 「아동수당법」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 아동수당 은 8세 미만의 아동으로 한정되어 있어 아동수당 공백기인 8세 이상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현금성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10만원을 금액을 계좌에 입금해주고 등록을 한 금융기관 등이 이를 펀드 형식으로 운용하며, 아동이 성인이 된 시점에 계좌에 있는 금액을 인출하여 필요한 학자금, 주택자금, 결혼자금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국가가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정부적립금을 우리아이자립펀드 계좌에 지급하도록 함(안 제44조의2제1항·제2항 신설).
- 나. 보호자는 정부적립금이 적립된 달에 한하여 월 10만원 이하의 금 액을 입금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2제3항 신설).
- 다. 아동은 우리아이자립펀드 계좌에 적립된 금액을 18세가 되는 날부 터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2제4항 신설).
- 라. 정부적립금의 지급 신청 등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아동수당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44조의2제7항 신설).
- 마. 우리아이자립펀드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우리아이자립펀드사업자로 등록하도록 함(안 제44조의3 신설).
- 바. 정부가 적립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아동 대상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44조의4 신설).

법률 제 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2항제6호 중 "제44조의2에"를 "제44조의5에"로 한다.

제28조의2제3항제4호의2 중 "제44조의2에"를 "제44조의5에"로 한다.

제29조의3제1항제1호 중 "제44조의2에"를 "제44조의5에"로 한다.

제44조의2를 제44조의5로 한다.

제4장에 제2절의2(제44조의2부터 제44조의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다.

제2절의2 우리아이자립펀드제도

제44조의2(우리아이자립펀드) ① 국가는 아동이 성인으로 성장한 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 (이하 "정부적립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 ② 정부적립금은 해당 아동 명의의 계좌(이하 "우리아이자립펀드"라한다)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 ③ 보호자는 우리아이자립펀드에 정부적립금이 적립된 달에 한하여월 10만원 이하의 금액(이하 "보호자적립금"이라 한다)을 입금할 수

- 있다. 이 경우 동일 아동에 대한 보호자적립금의 월 총액은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아동은 적립금(정부적립금과 보호자적립금을 말하며, 운용수익 및 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18세가 되는 날부터 인출하여 사 용할 수 있다. 다만, 아동에게 중대한 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중도에 인출할 수 있다.
- ⑤ 제44조의3에 따른 우리아이자립펀드사업자는 적립금만이 우리아이자립펀드 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⑥ 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정부적립금의 지급을 중지하며, 지급된 정부적립금은 환수하여야 한다.
- 1. 사망한 경우
-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 3.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된 영유아가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이 취소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난민인정결정이 철회된 경우
- 4. 그 밖에 아동의 생사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등 지급 중단의 사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⑦ 정부적립금의 지급 신청, 정부적립금의 지급을 위한 조사·질문, 정부적립금의 지급 결정, 정부적립금의 지급 시기, 우리아이자립펀 드의 사후관리, 권리보호, 시효 등에 대해서는 「아동수당법」 제6 조부터 제10조까지(제10조의 경우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 및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아동수당" 은 "정부적립금"으로, "8세"는 "18세"로 본다.
- ⑧ 중도 인출 방식·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4조의3(우리아이자립펀드사업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우리아이자립펀드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재무건전성 및 인적·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
 - 2.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 3.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 4.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5.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6.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우리아이자립펀드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

소하여야 한다.

- 1. 해산한 경우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 3.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우리아이자립펀드사업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간 우리아이자립펀드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다.
- ④ 우리아이자립펀드제도 관련 업무를 중단하려는 우리아이자립펀드사업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경우 등록이 말소된 우리아이자립펀드사업자는 말소된 날부터 2년간 우리아이자립펀드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다.
- ⑤ 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또는 제4항에 따라 등록말소를 신청한 우리아이자립펀드사업자는 우리아이자립펀드의 이전에 필요 한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입자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제4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되는 우리아이자 립펀드사업자에게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우리아이자립펀드사업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 관은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받는 우리아이자립펀드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① 그 밖에 우리아이자립펀드사업자의 책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4조의4(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우리아이자립펀드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우리아이자립펀드 운영에 관한 우리아이자립펀드사업자 평가
 - 2. 건전하고 효율적인 우리아이자립펀드제도 운영을 위한 전문 강사 육성 및 교재의 지원
 - 3. 적립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아동 대상 교육 실시
 - 4. 그 밖에 아동의 건전한 자산 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평가는 우리아이자립펀드사업자의 운용성과, 운용역량, 수수료의 적정성 등을 대상으로 하고, 그 밖에 평가 기준
-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1조제3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적립금을 지급받은 자제75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에"를 "제5항까지에"로 한다.
 -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제44조의2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아동수당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사람,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정당한 사유 없이 제44조의2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아동수당법」 제1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의2(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제15조의2(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생 략)	구축・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보	②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	
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	
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	
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u>제44조의2에</u> 따른 다함께돌	6. <u>제44조의5에</u>
봄센터가 보유한 정보	
7. ~ 14. (생 략)	7. ~ 14.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8조의2(아동학대정보의 관리	제28조의2(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①·② (생 략)	및 제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3
해당하는 자는 아동의 보호 및	

아동학대 발생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정보시스템상 의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 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를 보 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목적과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 재하여야 한다.

- 1. ~ 4. (생략)
- 4의2. <u>제44조의2에</u> 따른 다함께 돌봄센터의 장
- 5. ~ 7. (생략)
- ④・⑤ (생략)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 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 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 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 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 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1. ~ 4. (현행과 같음)
4의2. <u>제44조의5에</u>
5. ~ 7.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
제한 등) ①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 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장원, 지방자치단체(전담 공무원, 민간전문인력, 아동 학대전담공무원으로 한정한 다),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제4 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

2. ~ 26. (생략)

1
<u>제44</u> 조의
<u>5에</u>
2. ~ 26.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신 설> <신 설>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2절의2 우리아이자립펀드제도 제44조의2(우리아이자립펀드) ① 국가는 아동이 성인으로 성장 한 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 기 위하여 18세 미만의 아동에 게 매월 10만원(이하 "정부적 립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 정부적립금은 해당 아동 명 의의 계좌(이하 "우리아이자립

펀드"라 한다)에 입금하여 지 급한다.

③ 보호자는 우리아이자립펀드 에 정부적립금이 적립된 달에 한하여 월 10만원 이하의 금액 (이하 "보호자적립금"이라 한 다)을 입금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 아동에 대한 보호자적립 금의 월 총액은 1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④ 아동은 적립금(정부적립금 과 보호자적립금을 말하며, 운 용수익 및 이자를 포함한다. 이 하 같다)을 18세가 되는 날부 터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아동에게 중대한 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중도에
 인출

 할
 수
 있다.

- ⑤ 제44조의3에 따른 우리아이 자립펀드사업자는 적립금만이 우리아이자립펀드 계좌에 입금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⑥ 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정부적립금의 지급을 중지하며, 지급된 정부적립금은 환수하여 야 한다.
- 1. 사망한 경우
-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 3.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된 영유아가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이 취소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난민인정결 정이 철회된 경우
- 4. 그 밖에 아동의 생사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등 지급 중단의 사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⑦ 정부적립금의 지급 신청, 정 부적립금의 지급을 위한 조사

<신 설>

· 질문, 정부적립금의 지급 결정, 정부적립금의 지급 시기, 우리아이자립펀드의 사후관리, 권리보호, 시효 등에 대해서는 「아동수당법」 제6조부터 제1 0조까지(제10조의 경우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및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아동수당"은 "정부적립금"으로, "8세"는 "18세"로 본다.

8 중도 인출 방식·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3(우리아이자립펀드사업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우리아이자립펀드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재무건전성 및 인적・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

 업자, 투자중개업자 또는 집

합투자업자

- 2.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 3.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은행
- 4.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5.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6.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3 항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우리아이자립펀드사업자"라 한다)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u>1. 해산한 경우</u>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등록을한 경우
- 3.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 추지 못하게 된 경우
-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 된 우리아이자립펀드사업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간 우리아이자립펀드사업자 등록 을 할 수 없다.
- ④ 우리아이자립펀드제도 관련 업무를 중단하려는 우리아이자 립펀드사업자는 보건복지부장 관에게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 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이 말 소된 우리아이자립펀드사업자 는 말소된 날부터 2년간 우리 아이자립펀드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다.
- ⑤ 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 되거나 또는 제4항에 따라 등 록말소를 신청한 우리아이자립 펀드사업자는 우리아이자립펀 드의 이전에 필요한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입자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제4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되는 우리아이자립펀드사업자에게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우리아이자립펀드사업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받는 우리아이자립펀드사업자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① 그 밖에 우리아이자립펀드 사업자의 책무 등 필요한 사항 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 제44조의4(정부의 책무) ① 정부 는 우리아이자립펀드제도의 발 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 치를 할 수 있다.
 - 1. 우리아이자립펀드 운영에 관

 한 우리아이자립펀드사업자

 평가
 - 2. 건전하고 효율적인 우리아이자립펀드제도 운영을 위한 전문 강사 육성 및 교재의 지원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생 략)

제71조(벌칙) ① • ② (생 략)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③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다.
- 1. ~ 7. (생략) <신 설>

제75조(과태료) ① ~ ③ (생 제75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 3. 적립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아동 대상 교육 실시
- 4. 그 밖에 아동의 건전한 자산 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평가는 우리아이자립펀드사업자의 운 용성과, 운용역량, 수수료의 적 정성 등을 대상으로 하고, 그 밖에 평가 기준 •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44조의5(다함께돌봄센터) (현행 제44조의2와 같음)

제71조(벌칙) ① · ② (현행과 같 유)

- 1. ~ 7. (현행과 같음)
-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정부적립금을 지급받 은 자

략)

<신 설>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및 도의교육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같음)

-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제44조의 2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아동수당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사람,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⑤ 정당한 사유 없이 제44조의 2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아동수당법」 제1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u>⑥</u> ------<u>제5항까지에</u>----